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식생활 변화에 의한 식습관에서의 영양 불균형은 현대인의 6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었고, 그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의 발달로 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일정부분 질병의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식생활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은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well-being 현상에 결합되면서, 식이를 통한 영양소와 기능성분 섭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1월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일부 성분의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대한 표시가 금지되어 정부, 업계, 소비자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전체의 유용성 표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의 범위, 일반식품에 적용이 가능한 표시 기준 등을 조사하여 국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일본, Codex의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소 기능 강조 표시, 건강강조 표시, 질병위험감소 표시 등에 대한 표시 운영 사례를 비교한 결과,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우선 영양소 기능 표시 제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노령인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식생활을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반가공식품 분야를 육성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일반식품의 유효성 표시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도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확대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를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겠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적용대상식품을 정하고 있는 별표 3의 1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균형을 맞추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영양소기능 관련 강조표시의 허가 범위를 수록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삭제가 어려울 경우, 적용대상식품을 별표 3에 추가하여 이들 식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농업생산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제도는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